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생각이 있는 정부’라면 당연히 불허해야 합니다!”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1. 지난 11/2 SK텔레콤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알뜰폰 1위, 지역 케이블방송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인수를 전격 의결했습니다. 이것이 통신당국(미래부, 방통위)과 공정위의 인가를 받을 경우 SK텔레콤은 이동통신 1위(시장지배적 지위가 더욱 확장), 알뜰폰 1위, 지역 케이블방송 1위, 유선인터넷 2위(1위 KT와 100만명 차)가 되어, 통신 공룡을 넘어 초거대 통신 공룡이 되는 것입니다.

2. 이미 SK텔레콤은 통신공룡으로 온갖 독식, 포식, 불공정행위, 횡포 등을 자행하고 있고, 이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여기에 CJ헬로비전까지 인수하게 된다면 더욱 더 통신시장의 SK텔레콤 독점이 심화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제한되며, 통신재벌이 방송까지 진출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동통신 시장의 과도한 지배력이 방송, 인터넷 분야로도 부당하게 전이될 것이 뻔하고, 그러한 부당한 전이가 다시 이동통신 시장의 과도한 지배력을 더욱 확장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고, 우리 국민들의 SKT 그룹에 대한 Lock-In효과도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당연히 통신비 인하, 통신공공성 제고, 통신서비스의 질 향상, 통신이용자 보호라는 여러 측면에서도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국민들의 바람과는 다른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3. 지역방송이 가진 공공성과 특수성, 방송을 재벌대기업이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되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특질 등까지를 감안하면, 거대 통신재벌 SKT그룹의 지역 방송 장악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동통신사, 알뜰폰(알뜰통신) 회사, 지역 케이블 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도 부당하고 불공정한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하며,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기서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수십에서 수백만에 달하는 노동자들 모두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조치라는 점도 깊이 감안해야 할 지점일 것입니다.

4. 그래서, 통신당국은 SKT의 독점을 심화시키고, 이용자 권익을 침해할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인가하지 말아야한다고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이미 11월 2일 긴급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래 그 내용도 공유합니다.

5. 참여연대는 향후 통신단체, 방송·언론단체, 노동조합, 지역단체, 풀뿌리시민사회 등과 연대, 연계하여 이 이슈에 집중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 1 : 관련 공정거래법 조항 - 경쟁제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와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④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2007.8.3.>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 나. 당해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 별첨 2 : 참여연대의 11월 2일 관련 성명

통신당국은 SKT의 독점을 심화시키고, 이용자 권익을 침해할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 인가하지 말아야... 통신공룡 SKT가 유선방송·유선인터넷까지 장악하면 국민경제에 큰 부작용 예상
소비자의 선택권은 더욱 축소되고 시장지배자의 Lock-in강화될 것
통신당국은 오히려 SKT의 시장지배력 견제하고 알뜰폰에서 통신3사 퇴출해야

- 1) 오늘(11/2) SK텔레콤이 이사회를 열어 케이블·알뜰폰 업계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현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시장 활성화 위축과 이용자들의 권익 축소를 깊이 우려하며, 통신당국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인가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 2) SK텔레콤은 이미 통신시장의 공룡이고 압도적 시장지배자이다.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1위(49%)에, 알뜰폰 시장 점유율 2위(15%), 유선인터넷 2위(25%), IPTV 2위(28%)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49%) 뿐만 아니라 알뜰폰 시장(33%), 유료방송(26%¹⁾)까지 1위를 거머쥐게 되고 유선인터넷도 1위 KT와 100만 명 차이로 육박하게 된다. 통신시장 전체와 유료방송까지 장악해 들어가는 초거대 공룡이 되는 것이다.
- 3) 이처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에는 통신시장과 유선방송에서의 지배력 남용이 불을 보듯 뻔하게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SK텔레콤이 유무선 결합 상품을 내놓았을 때에도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선인터넷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시장 지배력 전이 현상이 벌어졌고, 이 때문에 학계에서도 시장지배력의 부당한 전이에 대한 규제와 함께 비대칭규제²⁾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SK텔레콤의 기존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보다 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이 알뜰폰 시장과 유료방송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강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4) 이미, 우리나라의 통신 시장은 경쟁이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³⁾. 그런데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방송·케이블·유선인터넷으로 전이되어 확고한 1위 사업자가 될 경우에는 통신 시장 전체의 건전한 경쟁과 활력이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 5) 게다가 SK텔레콤의 유무선 결합상품이 나왔을 때에 이미 소비자 Lock-In 효과가 발생하여, 시장점유율 고착화 및 시장지배력의 부당한 전이 현상이 벌어졌는데도, SK텔레콤이 방송·케이블·유선인터넷까지 석권하게 될 경우 더욱 심각한 소비자 Lock-In 효과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통신 상품 결정권이 축소되고 통신사들의 요금인하 경쟁도 약화될 것이다.
- 6) 따라서 미래부·방통위·공정위, 통신당국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를 인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통신당국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인가할 경우에는 심각한 통신시장 전체의 시장점유율 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통신시장 위축과 이용자 권익 및 소비자들의 선택권의 축소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통신당국은 SK텔레콤이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

1)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시장 전체의 26%

2) 1위 사업자에게 불리한 규제를 가하는 정책. 일본 통신 정책 사례.

3)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4년도)> 2015.11.3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하도록 하여 MNO⁴⁾와 MVNO⁵⁾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통신요금 인하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

4) Mobile Network Operator 통신망 사업자, 우리나라의 경우 SK텔레콤, KT, LGU+

5)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통신망 사업자로부터 통신서비스를 재판매 하는 사업자. 알뜰폰업체